

## 명예퇴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47조의 3, 제81조의 2(명예퇴직)에 따라,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전임교원과 직원 중 일반직, 기능직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신청자격)**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본인이 명예퇴직하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.

**제4조(신청의 제한)** ① 명예퇴직 신청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1.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, 승진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2.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또는 감사기관 경찰,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인 자
3.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업무수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여 퇴직하여야 하는 자(단,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4. 본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자

② 기관의 장은 교직원 수급계획, 예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 신청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
**제5조(공지)** 기관의 장은 매 학기 명예퇴직 대상 및 인원·명예퇴직 신청기간·수당지급방법등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 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전 교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신청절차)**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“별표1”의 명예퇴직신청서를 매 학기말 6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당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심사위원회)**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,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**제8조(심사결정)** ① 심사위원회는 명예퇴직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다.

1. 공상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교직원
2. 잔여 근무기간이 짧은 교직원
3. 장기근속 교직원

### 3-3-15 명예퇴직 규정

4. 상위직급 교직원

5.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자

② 명예퇴직 대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장에게 제청하여 확정된 자로 한다.

**제9조(대상자 결정통지)** 퇴직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사직원 제출)**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발령한다.

**제11조(명예퇴직일)** 명예퇴직일은 매 학기말로 한다.

**제12조(명예퇴직수당)** 명예퇴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“별표 2”의 퇴직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

**제13조(수당 지급시기)**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4조(대우)** 명예 퇴직한 교직원은 정년퇴직에 준한 퇴임식을 한다.

**제15조(기타사항)** 명예퇴직 대상자의 결정과 심사방법, 수당지급절차,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### 교직원 명예퇴직 신청서

소 속			교직원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원	직 급	
성 명	한 글		주민등록번호			
	한 자		주 소			
전화번호(자택)			근 속 연 수			
정년월일			정년잔여기간 (수당지급대상기간)			
명예퇴직 신청사유						

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정관 제47조의 3, 제81조의 2  
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 . .

신 청 인 : (인)

소속 부서장 : (인)

<별표 2>

###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 정 기 준
가.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× 정년잔여월수
나.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	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× [60+{(정년잔여월수-60)/2}]
다. 10년 초과인 자	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(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)

#### 비 고

1.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,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2. 월 봉급액 산정은 본봉을 기준으로 한다.